

지역 노인복지 사무소: _____

노인 프로그램의 확대된 재택 서비스 및 지역 서비스

청문회, 화해 회의 및 검토에 대한 권리

노인 프로그램의 확대된 재택 서비스(EISEP)에 따라 케이스 관리를 받거나, 비시설 임시 간호 또는 노인 프로그램의 지역 서비스(CSE)에 따라 재택 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역 사무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 지역 사무소는 이의 제기에 대한 청문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a. 기능적으로 EISEP 자격이 없다는 지역 사무소의 결정에 따라 EISEP 서비스가 거부된 경우(기능적으로 자격이 되더라도 프로그램 자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 사무소가 서비스를 거부할 수도 있음).
 - b. 지역 사무소가 평가한 비용 분담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 c.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EISEP에서 퇴출된 경우:
 - i. 9 NYCRR § 6654.6에 따른 비용 분담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ii. 평가를 거부하거나, 케어 플랜에 동의하지 않거나, 케이스 관리자나 직원이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Medicaid 자격 또는 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소득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등 EISEP 요구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iii. 향후 90일 내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귀하는 이의 제기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역 사무소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사무소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청문회에 대한 연기가 요청되거나 지역 사무소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청문회가 지연되는 경우, 연기 또는 지연된 시간만큼 60일 기한은 연장됩니다. 화해 회의가 있는 경우, 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60일 기한이 연장됩니다.

4. 더 짧은 통보 기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지역 사무소는 EISEP 청문회 시간, 날짜, 장소를 청문회 날짜로부터 적어도 14일 전에 통보합니다.
5.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여 청문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청문회 날짜보다 적어도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6. 간섭, 강요, 차별 또는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대리인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역 사무소는 장애가 있거나 영어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EISEP 관련 중요한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문회와 관련하여 이중언어 서비스, 수화 통역사, 이동 지원과 같은 편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소에 전화하여 요청하세요.

청문회

1. EISEP 청문회는 지역 사무소가 지명한 사람 또는 패널이 주재할 수 있습니다. 청문관은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 관계가 없어야 하며, 이의제기 사안과 연관이 없고, 진행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승인된 모든 증거가 이의 제기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증거 제출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케이스에 대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케이스 파일에 있는 모든 관련 문서 또는 기록은 귀하나 귀하의 지명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4. EISEP 청문회에서 지켜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부적격 판정에 관한 결정은 9 NYCRR § 6654.15에 있는 EISEP 자격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b. 지역 사무소가 산정한 비용 분담액에 관한 결정은 9 NYCRR § 6654.6에 있는 EISEP 비용 분담 지침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 c. 비자발적인 퇴출에 관한 결정은 해당되는 모든 모든 연방 및 New York State 법과 규정,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NYSOFA)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화해 회의에 대한 권리

1. EISEP 청문회의 판정이 있기 전까지 언제라도 비공식적인 화해 회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화해 회의에 참가한다고 해서 청문회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3. 화해 회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어 청문회가 필요없는 경우, 고객과 지역 사무소 간에 화해 합의서가 체결되고 서명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NYSOFA)가 심사

NYSOFA는 지역 사무소의 부적격 판정 또는 비용 분담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EISEP 서비스 수령자 또는 신청인에게 지역 사무소의 청문회 결과를 판정하고 심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1. NYSOFA가 EISEP 청문회 결과를 심사하도록 요청하려면 지역 사무소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NYSOFA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청서에 본인의 이름과 해당 지역 사무소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사 요청서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Office of General Counsel
2 Empire State Plaza, 5th Floor
Albany, New York 12223

2. NYSOFA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합니다.
3.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NYSOFA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NYSOFA가 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결정을 내립니다.

4. NYSOFA 는 사무소에서 승인한 합의서에 따라 분쟁 사안이 해결된 경우 언제라도 청문회 또는 심사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5. NYSOFA는 9 NYCRR § 6651.3 및 주 행정절차법(Stat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준수합니다.

청문회 또는 화해 회의 요청

청문회 또는 화해 회의를 요청하려면 (____)____-____ 번으로 지역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다음 주소로 서면 요청서를 보내세요.

{AGENCY NAME}

{AGENCY NAME 2}

{ADDRESS}

{ADDRESS}